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5
----------	-----

2019.06.24.(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6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6월 13일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맹경재)

가. 제안이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3.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2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

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3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통관 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보고(안 제5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전문위원 : 오문석)

-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다만, 동 조례의 제정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 수입업체의 현황과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느 정도 인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 안전인증(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부품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제4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p>가.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p> <p>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p> <p>2)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p> <p>나. 면제 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p>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p>가. 면제 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p> <p>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p> <p>2) 면제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p> <p>나. 면제 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p>

비고: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사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 부품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	(별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공단	→	확인 공단	→	면제 확인서 작성 공단	→	면제 확인서 발급 공단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사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부품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사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금액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별표 제2호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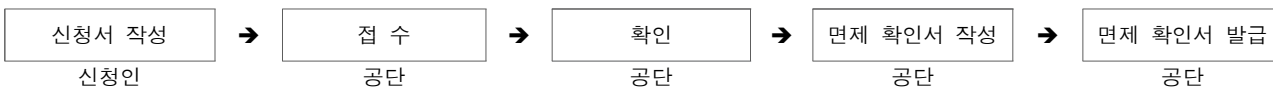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사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 확인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수량	
	사용장소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이 면제됩니다.

관계법령 발취

□ 승강기 안전관리법(약칭: 승강기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령 (약칭: 승강기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전부개정]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③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